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작물의 예시에 안무저작물 추가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15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저작물의 예시에 안무저작물 추가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중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Ⅲ. 검토의견

1. 저작물의 예시에 안무저작물 추가

가. 개정안 요지

- 저작물의 예시에 ‘안무저작물’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관련 업무를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명시함(안 제113조제4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 9. (생략) ② 삭제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u> 4. ~ 9. (현행과 같음)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3. (생략) 4. <u>저작물등의</u>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제113조(업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u> -----

5. ~ 13. (생 략)	----- ----- 5. ~ 13.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저작물의 표현 방식에 따라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음.¹⁾

1)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물 분류표 : 저작물 종류별 예시 및 표현방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 발췌)

구분	종류 (예시)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처, 십자수 도안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仪, 약도 등
편집저작물	사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약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응용 프로그램, 원시코드, 소스코드, 폰트프로그램 등 컴퓨터 프로그램

- 위 분류는 예시적 규정으로, 여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됨.

○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의 저작물 예시에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별도로 신설하여, 안무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K-POP 안무 등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무저작물은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이미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현행법 제4조제1항제3호)” 등수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 제4조는 저작물의 종류를 표현의 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법상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므로²⁾ 새로운 매체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 예시규정을 계속 확장할 경우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저작물이 무용저작물과 중첩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이 본래 가지는 기본 속성·성격’에

2) 2012. 10. 24. 서울고등법원 2011나104668 판결,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안무는 ‘샤이 보이’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구성원의 각자 역할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소녀들로 구성된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며,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으로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따른 개괄·예시 규정에 불과한 바 안무저작물도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별도 유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으며, 효과적인 안무저작물 보호를 위해서는 예시 규정을 추가하는 법개정보다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안무 관련 저작권 교육, 안내서 발간,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개정안 제113조에서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원회의 기존 업무(저작권 법·제도 연구, 이용질서 확립 등)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개정안의 문구가 오히려 기존 위원회 업무 범위를 축소·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

단체명	의견 주요내용
음악콘텐츠 협회	○ 안무를 세분화하여 별도의 저작물로 규정하는 개정에 반대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이미 무용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본 건 개정안에서 정하는 안무와 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음 - 다른 저작물(예:클래식과 대중음악 모두 "음악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안무의 개별동작 또는 전체동작을 저작물로 볼 것인지, 안무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동작이나 단순 동선 변경 등에 대해 창작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기준이 불명확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 이행을 확인하는 개정에 반대 - 표준계약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안무 저작물 보호 및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 취지와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각종 고시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등에 대한 준수는 법률상 강제성이 없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무저작권 표준계약서의 경우 K-pop 산업의 특수성, 계약 형태의 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그 사용을 강제하게 될 경우 제작 실무상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방송 협회	○ 저작물 예시 규정에 "무도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 - 창작성이 인정되는 안무는 현행법 상으로도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함.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안무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작권법상 안무저작물로 인정하기 힘들. 개정안이 저작물의 예시로 안무저작물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무단 사용이나 표절 논란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여부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 - 표준계약서에 모든 개별 계약을 담을 수 없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뿐 '의무사용'을 강제하지 않음.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이용이 의무적인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으며,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참고2

해외 입법례

국가명	내용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총칙 (a)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그로부터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은 다음의 범주를 포함한다. (4) 무언극 또는 안무저작물(choreographic works);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12조의2 본 법령에서 의미하는 저작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4. 안무 작품(Les oeuvres chorégraphiques), 서커스 공연 및 묘기, 무언극으로 그 내용이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고정된 것
독일 저작권법	제2조(보호저작물) ① 보호되는 문학, 예술 및 예술저작물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것이 해당된다. 3. 무용저작물(Werke der Tanzkunst)을 포함한 무언저작물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저작물의 예시) ① 이 법률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3. 무용(舞踊) 또는 무언극저작물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3조(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1) 이 편에서- "어문저작물"이란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이외에, 저술되고 말해지거나 노래되는 저작물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d) 데이터베이스; "연극저작물"은 무용(dance)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음악저작물"이란 음악과 함께 노래되고 말해지거나 또는 실연되는 말 또는 행동을 제외한, 음악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의미한다.
중국 저작권법	제3조 이 법에서 저작물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영역의 독창성이 있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적성과를 말하며, 아래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3. 음악·희극·곡예(曲艺)·무도(dance)·잡기예술(杂技艺术)저작물
대만 저작권법	제5조 ① 이 법에서 저작물이란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다. 3. 연극, 무용저작물